



보건복지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치과에서 비급여(보철 등)대상 진료시 진찰료 등 인정여부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치과분야에서 교정이나 보철 등 비급여대상 진료 중 수반되는 진료행위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치과에서 치아우식증 등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및 방사선 진료 등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당연 요양급여로 적용되며, 다만 동 진료과정에서 건강보험 행위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)제3부 행위비급여목록표상의 비급여 행위만을 시행한 날의 진찰료는 비급여임

나. 또한, 현행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1항 별표2에서 명시하고 있는 치과보철(틀니 등 임플란트 포함)을 위한 진료는 요양급여대상이나, 치과보철의 직접비용(행위·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 제반 진료)과 임플란트시술을 목적으로 사전에 실시하는 진료행위(골이식술 등) 비용은 진찰료를 포함하여 비급여대상임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치과병원협회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

주무관 **김정주**

보건사무관 **정제혁**

보험급여과장 **12/20**
이스란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3024 (2010.12.20.) 접수 수가등재부-3225
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8층 / <http://www.mw.go.kr>
전화 02-2023-7416 전송 02-2023-7422 / wjdw80@korea.kr / 공개